

# 19세기 말~20세기 초 궁방전 지주경영의 또 다른 양상\*

- 삼남지역 導掌을 중심으로 -

박성준\*\*

1. 머리말
2. 삼남지역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
3. 삼남지역 궁방전 도장의 지주경영 양상
  - 1) 절수·사여지를 개간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 2) 매득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 3) 사여된 둔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
  - 4) 記上田畝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4. 삼남지역 궁방전 도장의 지주경영 성격
5.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과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곡물의 상품화가 진전되고 지주제는 발전하였다. 국내 수요에 맞춰 진전되었던 곡물의 상품화는 개항을 계기로 일본에 곡물 수출이 증가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지주제 역시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sup>1)</sup>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곡물 상품화의 진전과 지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3649).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1) 김용섭, 1970·1971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I, 일조각; 1975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제의 발전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정해 왔지만 최근 '19세기 위기론'을 주장하며 이를 부정하는 연구가 제기되었다.

'19세기 위기론'을 제기한 연구는 지주가의 추수기 분석을 통해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두락당 지대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토지생산성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조선의 경제가 19세기에 들어와 정체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봉착하였"고, "1905년 조선왕조의 멸망이 어떤 강력한 외세의 작용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모든 체력이 소진된 나머지 스스로 해체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이러한 '19세기 위기론'에 대해 두락당 지대량의 하락을 곧 토지생산성의 하락으로 등치시켜 파악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19세기 위기론'은 지주경영에 반영된 지대율이나 지대수취 방법의 변화와 같은 두락당 지대량 이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19세기 위기론'은 과장된 평가라고 비판하였다.<sup>3)</sup>

최근 학계에서 전개되고 이러한 논쟁은 민전의 지주경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위기론'을 제기한 연구는 민전뿐 아니라 공방전을 대상으로 한 지주경영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기존 연구가 개항을 계기로 지주제가 확대·강화되어 갔다고 파악한 것에 대해 개항기에 성장한 지주는 개항장을 배후지로 하는 지주일 뿐이며 다수의 일반적 지주는 정체 또는 쇠퇴 과정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방전의 지주경영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sup>4)</sup>

상·하, 일조각: 1992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홍성찬, 1992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박천우, 1983 『한말·일제하의 지주제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최원규, 1985 『한말·일제하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50·51.

2) 이영훈, 2004 『총설: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382면.

3) 김건태, 1999 『1743~1927년 전라도 영암 남평문씨 문중의 농업경영』 『대동문화연구』 35; 2005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부재지주지 경영』 『대동문화연구』 49; 허수열, 2011 『제7장 농업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4) 이영훈, 1985 『개항기 지주제의 一存在形態와 그 停滯의 위기의 실상: 명례공방전에 관한 사례분석』 『경제사학』 9, 363-365면.

19세기 말~20세기 초 명례궁의 지주경영을 분석한 연구는 명례궁 장토의 지대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당시 지주제의 생산력적 기초가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위기적 요인은 曷이 부재지주리는 그 존재형태의 형식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궁의 지주로서의 성격과 특질에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며, “생산과정으로부터 일체 분리된 채 지대수입에만 기생하는 명례궁의 지주제는 명례궁과 같은 반열에 있는 양반 부재지주의 경우 통상적인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식민지시대에 존재한 ‘畝音介在型’의 이른바 ‘정태적 지주’의 역사적 전신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5)</sup>

왕실지주가 부재지주이고 궁방전의 지대량이 감소한 것에 기초해 왕실지주를 정태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러한 성격을 조선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었던 부재지주 전반에까지 확대 적용해 개항기 지주제 전반이 정채 또는 쇠퇴 과정에 있었다고 일반화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궁방전은 궁방이 監官을 두고 경영한 장토였다. 그런데 궁방전은 관리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1908년 작성된 『國有地調査書(抄)』에 따르면 1司 7宮의 장토는 총 626처였다.<sup>6)</sup> 이를 관리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監官을 파견해서 관리한 장토가 225처(35.9%), 導掌을 차정해서 관리한 장토가 259처(41.4%), 郡에서 징수해서 상납하는 장토가 50처(8%), 관리방식이 기재되지 않은 장토가 92처(14.7%)였다. 관리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도장이 차정된 장토가 259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궁방전의 지주경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실지주와 함께 궁방전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도장의 지주경영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방전 도장의 지주경영 분석을 통해 궁방전에서 전개된 지주경영의 또 다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궁방전의 지주경영을 분석했던 기존연구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사적 지주경영을 분석한 연구도 삼남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비교를 위해

5) 이영훈, 위의 논문, 426-427면.

6) 『國有地調査書(抄)』(KO 중B13G 31); 박성준, 2014 『『國有地調査書(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와 작성 주체』 『규장각』 45.

삼남지역 도장의 지주경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도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로는 『庄土文績類』와 『導掌決定原案』이 있다. 『장토문적류』는 장기간에 걸쳐 도장과 궁방이 작성하고 유통한 문서를 모아 놓은 문서철로 이를 통해서도 도장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sup>7)</sup> 이에 반해 『도장결정원안』은 1907~1910년 도장정리작업을 담당했던 기관이 도장정리 당시의 도장과 궁방전의 실태 전반을 조사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19세기 말~20세기 초 도장의 존재양태와 지주경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장결정원안』에 수록된 삼남지역 도장을 대상으로 도장의 지주경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삼남지역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

궁방전은 발생기원에 따라 크게 給價買得地, 折受·賜與地, 民結免稅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절수는 원칙적으로 無主陳荒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 토지가 장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간 작업을 거쳐야 했다. 절수한 궁방전의 개간은 궁방이 물력을 투여한 경우도 있었지만, 민들이 주도적으로 물력을 투여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물력을 투여한 주체에 따라 궁방전의 실질적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궁방전은 발생기원에 따라 성격이 구분되었다.<sup>8)</sup>

궁방전에 차정된 도장도 발생기원에 따라 作導掌, 納價導掌, 役價導掌으로 구분되었다. 작도장은 궁방에 기여한 여러 공로로 도장에 차정된 자였고, 납가도장은 궁방에 돈을 납부하고 도장에 차정된 자였다. 역가도장은 스스로 물력을 들여 궁방전을 개간하고 도장에 차정된 자였다.<sup>9)</sup>

7) 박성준, 2014 『규장각 소장 『庄土文績類』 분류의 원 질서 검토』 『한국문화』 68.

8) 박준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이영훈, 1988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9)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63-64면.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도장의 지주 경영 양상은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도장의 지주경영 양상을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삼남지역 궁방전과 도장

번호	도	군	궁방	도장
1	경상남도	곤양	내수사	조재희
2	경상남도	곤양	내수사	조영호
3	경상남도	창원	용동궁	유성표
4	전라남도	영암	어의궁	하윤홍
5	충청남도	평택	내수사	최한응
6	충청남도	홍산·은진	수진궁	박명환
7	충청남도	온양·연기	수진궁	김중연 / 김종식
8	충청남도	덕산·예산	육상궁	김낙여
9	충청남도	임천·한산	육상궁	김이현

\* 출처: 『도장결정원안』(奎 21654, 21669)

『도장결정원안』에 수록된 삼남지역 궁방전은 경상남도 3건, 전라남도 1건, 충청남도 5건으로 총 9건이다. 이들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 및 궁방전에 대한 도장의 주장을 살펴본다.

① 조재희가 도장으로 차정된 경상남도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토지기원이 “明惠公主房에서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명혜공주방 때 형성되었다가 내수사로 이속되었던 것이다. 1691년(숙종 17) 곤양군은 명혜공주방 장토의 양안을 작성했는데 양안의 내제가 “慶尙道昆陽郡明惠公主房折受防堰泥生海澤畚打量成冊”이었다.<sup>10)</sup> 곤양군 소재 명혜공주방 장토는 원래 海澤地였는데 이를 절수받아 築堰作畚한 장토였던 것이다.

10) 『慶尙道庄土文續』(奎 19302) 4책, “慶尙道昆陽郡明惠公主房折受防堰泥生海澤畚打量成冊”(1691)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납가도장으로 분류되었다.<sup>11)</sup> 18세기 초 명혜공주방은 거듭된 흉년으로 稅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1708년에는 화재까지 발생했다. 이에 명혜공주방은 흉년과 화재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1714년 銀子 50냥을 받고 金逵를 곤양군 장토의 도장에 차정하였다.<sup>12)</sup> 명혜공주방에서 이래한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혜택지를 절수받아 제언을 쌓고 개간한 장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인 것이다.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도장을 납가도장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조재희는 명혜공주방이 화재로 인해 器皿을 修補하기 위해 장토를 팔아서 이를 매득했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조재희는 명혜공주방에게 돈을 납부하고 매득한 것은 도장권이 아닌 토지소유권이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② 조영호가 도장으로 차정된 경상남도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延祔宮에서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sup>14)</sup>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延祔君房 때 형성되었다가 내수사로 이속되었던 것이다. 1707년 곤양군은 연잉군방 장토의 양안을 작성했는데, 양안의 내제가 “慶尙道昆陽郡延祔君房折受無主田畓及加耕字號庫員打量成冊”이었다.<sup>15)</sup> 본 장토는 해안가에 위치했는데,<sup>16)</sup> 해안가의 無主田畓을 절수받아 개간했던 것이다.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작도장으로 분류되었다.<sup>17)</sup> 연잉군방은 해당 장토의 관리를 둔감에게 일임했는데 未收가 많아 궁에 공로가 있는 洪壽才를 도장에 차정하였다.<sup>18)</sup> 연잉군방에서 이래한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해안가의 無主田

11) 『各道郡各穀時價表』(奎 21043) 1·2책, “各宮導掌文券還收簿”(이하 『各宮導掌文券還收簿』)

12) 『慶尙道庄土文績』(奎 19302) 4책, 1714(甲午)8, 導掌差帖文記, 明惠公主房 → 金逵: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認定書, 1909.3.2.

13)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請願書, 1908.9.

14) 『국유지조사서(초)』에는 ‘延祐宮에서 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延祔宮의 오키이다.

15) 『慶尙道庄土文績』(奎 19302) 7책, “內需司昆陽田畓量案”(1707)

16)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2號 決定』, 理由: 請願書, 1908.3.16.

17) 『各宮導掌文券還收簿』

18) 『慶尙道庄土文績』(奎 19302) 7책, 1720(庚子)8, 도장차첩문기, 延祔君房 → 洪壽才: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2號 決定』, 理由.

밭을 절수받아 개간한 장토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이다.

이에 대해 조영호는 본 장토는 林之茂와 홍수재가 거액을 들여 바닷물이 출입하는 지역에 제언을 쌓고 개간해서 연잉군방에 투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임지무가 창건했다는 碑까지 세워져 있다고 하였다.<sup>19)</sup> 연잉군방에서 이러한 내수사 장토는 민들이 개간해서 투탁한 사유지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③ 유성표가 도장으로 차정된 경상남도 창원군 소재 용동궁 장토는 효종대에 賜與 형식으로 移付되었던 것인데,<sup>20)</sup>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免稅屯土의 移付”라고 기재되어 있다. 용동궁이 창원군 장토를 사여받고 작성했던 성책과 양안의 제목을 보면 『昌原府龍洞宮屯田畓災陳物故作者石數縣錄成冊』(奎 18604: 1671), 『昌原府所在龍洞宮屯田畓收稅穀物數成冊』(奎 20350: 1678), 『慶尙道昌原府所在龍洞宮屯田畓落漏處及陳還起加耕庫員改打量成冊』(奎 18318, 奎 18319: 1693)으로 모두 이 장토를 “屯田畓”이라고 지칭하였다. 창원군 소재 용동궁 장토는 효종대에 사여 방식으로 둔토를 移付받았던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해서 사여의 대상이 둔토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둔토의 최초 발생기원은 파악할 수 없다.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납가도장으로 분류되었다.<sup>21)</sup> 1722년 용동궁은 재정 부족으로 丁銀子 200냥을 받고 盧世璣를 도장에 차정했다.<sup>22)</sup> 창원군 소재 용동궁 장토는 사여받은 둔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이다. 이에 대해 유성표는 앞서 살펴본 다른 도장과 달리 본인은 궁방전의 소유권이 아닌 도장권을 매득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sup>23)</sup>

④ 하운홍이 도장으로 차정된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어의궁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본궁의 장토로써 연대는 멀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19)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2號 決定』, 理由: 請願書, 1908.3.16.

20) 『[內需司]庄土文績』(奎 19307) 18책, 1785.8, 龍洞宮手本.

21) 『各宮導掌文券還收簿』

22) 『慶尙道庄土文績』 3책, 1722(壬寅).9, 導掌差帖文記, 龍洞宮 → 盧世璣: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4號 決定』, 認定書.

23)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4號 決定』, 聽取書, 1909.7.2.

있다.<sup>24)</sup> 이를 통해서는 본 장토가 궁방전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고 최초의 발생기원은 파악할 수 없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최초의 발생기원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의궁이 도장을 차정하면서 “玉泉面田畝及加次川堰畝”이라고 지칭했고,<sup>25)</sup> 조수의 피해를 입고 매년 제방수리비를 지출한<sup>26)</sup>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장토는 절수를 받아 제언을 쌓고 개간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납가도장으로 분류되었다.<sup>27)</sup> 1808년 어의궁은 150냥을 받고 金廷基를 도장에 차정했다.<sup>28)</sup> 영암군 소재 어의궁 장토는 조수가 출입하는 지역에 제언을 쌓고 개간한 장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이다.

영암군 장토는 하윤홍이 도장으로 인정을 받아 배상을 받았지만<sup>29)</sup> 그는 실질적으로 장토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본 장토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는 장토를 自備築堰하고 鄉導掌으로 지칭되던 金順敬이었다.<sup>30)</sup>

⑤ 최한응이 도장으로 차정된 충청남도 평택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賓人房에서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평택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빈인방 때 형성되었다가 내수사로 이속되었던 것이다. 본 장토는 관할기관이 빈인방에서 내수사로 변동되었다는 것은 파악되지만 최초의 발생기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본 장토가 연해에 있었고,<sup>31)</sup> 1902년 평택군에서 작성한 양안의 제목이 『忠淸南道平澤郡北面所在內需司堰畝查檢量案』인<sup>32)</sup> 것으로 미루어보아 절수를 받고 제언을 쌓아 개간한 장토로 이해된다.

24) 어의궁 장토가 소재한 영암군 옥천면은 1906년 9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남군으로 소속이 변경된 지역이다(『관보』, 1906.9.28).

25) 『全羅道庄土文績』(奎 19301) 17책, 1808(戊辰).7, 도장차첩문기, 於義宮 → 金廷基.

26)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113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3.16.

27) 『各宮導掌文券還收簿』

28) 『全羅道庄土文績』(奎 19301) 17책, 1808(戊辰).7, 도장차첩문기, 於義宮 → 金廷基.

29)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106면.

30) 『導掌決定原案』(奎 21654), 『導第113號 決定』, 聽取書, 1910.3.15.

31)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奎 19300) 26책, 完文謄本, 1902.12.

32)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奎 19300) 26책, “忠淸南道平澤郡北面所在內需司堰畝查檢量案”(1902)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작도장으로 분류되었다.<sup>33)</sup> 최한응은 1903년 도장에 차정되었는데 도장에 차정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34)</sup> 빈인방에서 이러한 평택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연해 지역에 제언을 쌓고 개간한 장토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이다. 이에 대한 도장 최한응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⑥ 박명환이 도장으로 차정된 충청남도 홍산·은진군 소재 수진궁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본궁의 장토로써 연대는 멀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본 장토는 수진궁과 도장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해서 매득했던 것이다.<sup>35)</sup>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납가도장으로 분류되었다.<sup>36)</sup> 도장이 토지를 매득하는데 투자한 것을 納價하고 도장에 차정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sup>37)</sup> 홍산·은진군 소재 수진궁 장토는 궁방과 도장이 합자하여 매득한 장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이다. 이에 대해 도장 박명환은 수진궁에 투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8)</sup>

⑦ 김중연과 김종식이 도장으로 차정된 충청남도 온양·연기군 소재 수진궁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연기군 장토는 최초 발생기원이 확인되지 않지만 온양군 토지는 無後奴의 記上田畓이었다.<sup>39)</sup>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작도장으로 분류되었으며,<sup>40)</sup> 도장이 차정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41)</sup> 온양·연기군 소재 수진궁 장토는 記上田畓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이다. 이에 대해 김중연은 자신의 5대조가 1783년 崔昌熙에게 매득한 토지를 투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2)</sup>

33) 『各宮導掌文券還收簿』

34)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奎 19300) 26책, 1903.1, 도장차첩문기, 內需司 → 崔校理奴興孫.

35)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理由.

36) 『各宮導掌文券還收簿』

37)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理由.

38)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認定書, 1909.3.18.

39)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奎 19300) 37책, 1753.11.22., 도장권매매문기.

40) 『各宮導掌文券還收簿』

41)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 37책, 1753.12, 도장차첩문기, 壽進宮 → 金富潤.

⑧ 김낙여가 도장으로 차정된 충청남도 덕산·예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본 장토는 1696년 崔貴人房(=육상궁)이 매득했던 것이다.<sup>43)</sup>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작도장으로 분류되었으며,<sup>44)</sup> 도장이 차정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45)</sup> 덕산·예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는 매득한 장토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이다. 이에 대해 김낙여는 본 장토는 매득한 사유지를 최귀인방에 투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6)</sup>

⑨ 김이현이 도장으로 차정된 충청남도 임천·한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는 『국유지조사서(초)』에 발생기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본 장토는 사패지였다. 1847년 작성된 임천·한산군 장토 양안의 표제가 『忠淸道林川郡韓山郡所在毓祥宮賜牌蘆田改打量案』(奎 18713-1)이었고, 양안의 임천군 부분에 “毓祥宮折受賜牌之地”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 장토에 차정된 도장은 작도장으로 분류되었으며,<sup>47)</sup> 도장차첩문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임천·한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는 사패지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인데, 본 장토의 작도장으로 분류된 김이현은 마름이면서 도장을 겸직한 존재였다.<sup>48)</sup>

지역별로 분류했던 <표 1>의 9개 장토를 『국유지조사서(초)』, 『도장결정원안』, 『장토문적류』, 양안 등을 통해 파악한 궁방전의 최초 발생기원에 따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2)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9號 決定』, 請願書, 1907.9.11.

43)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8號 決定』, 理由: 덕산군 장토는 1906년 9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沔川郡으로 소속이 변경된 지역이다(『관보』, 1906.9.28).

44) 『各宮導掌文券還收簿』

45) 『[內需司]忠淸道庄土文續』 17책, 1696(丙子).8, 도장차첩문기, 崔貴人房 → 孫興萬.

46)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8號 決定』, 原情, 1908.5.

47) 『各宮導掌文券還收簿』

48)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1號 決定』, 聽取書, 1910.2.19.

〈표 2〉 삼남지역 궁방전의 발생기원과 도장의 유형

번호	궁방	도	군	도장	궁방전의 발생기원	도장 유형	도장 주장
1	내수사	경상	곤양	조재희	절수 개간	납가	매득
2	내수사	경상	곤양	조영호	절수 개간	작도장	투탁
3	어의궁	전라	영암	하윤홍	(절수) 개간	납가	납가
4	내수사	충청	평택	최한응	(절수) 개간	작도장	×
5	육상궁	충청	임천·한산	김이현	사여 개간	작도장	마름검직
6	수진궁	충청	홍산·은진	박명환	매득	납가	투탁
7	육상궁	충청	덕산·예산	김낙여	매득	작도장	투탁
8	용동궁	경상	창원	유성표	둔토 사여	납가	납가
9	수진궁	충청	온양·연기	김종식	記上田畷	작도장	투탁

9개 장토의 발생기원은 절수·사여가 6건, 매득이 2건, 記上이 1건이었고, 도장의 유형은 납가도장이 4건, 작도장이 5건이었다. 9개 장토에 도장이 결합된 양상은 크게 4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절수·사여지를 개간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①·② 곤양, ③ 영암, ④ 평택, ⑤ 임천·한산 총 5곳), 두 번째는 매득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⑥ 홍산·은진, ⑦ 덕산·예산 총 2곳), 세 번째는 사여된 둔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⑧ 창원), 네 번째는 記上田畷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이었다(⑨ 온양·연기).

『국유지조사서(초)』, 『도장결정원안』, 양안 등에 근거해 궁방전과 도장의 결합 유형을 위와 같이 분류했지만 이에 대한 도장의 주장은 달랐다. 개간하거나 매득한 장토에 대해 도장은 대부분 투탁한 사유지라고 주장하였다. 개간한 장토는 개간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도장정리기관과 도장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도장의 지주경영 양상을 살펴본다.

### 3. 삼남지역 궁방전 도장의 지주경영 양상

#### 1) 절수·사여지를 개간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 ① 납가도장이 차정된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

본 장토는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지는 곳에 위치한 해택지여서 제언을 쌓고 개간해서 장토를 형성하였다. 제언을 쌓은 초기에는 조수가 낮아 제언의 높이가 木尺으로 2尺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60~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강의 입구가 넓어져 옛날 제언으로는 조수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도장은 옛날 제언을 폐지하고 새로 外堰을 수축하였다. 그런데 조수가 해마다 높아져서 제언수축 작업도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제언의 높이가 2~3丈에서 5~6丈까지 이르게 되었고 길이도 200여 把가 되었다. 계속된 증축으로 인해 현재 水桶 1坐를 이와 같이 완축하려면 萬元으로도 부족한 정도가 되었다.<sup>49)</sup>

증축된 제언은 자연재해로 파손되기도 했다. 1844년, 1885년, 1904년 세 차례에 걸친 큰 홍수로 인해 제언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도장은 수축비로 수천 금을 들여 제언을 수리하였다.<sup>50)</sup> 도장정리기관이 실지조사를 하였을 때 마름도 제언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1884년 60원, 1885년 140원, 1891년 80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51)</sup> 도장은 제언을 쌓고 증축하면서 제언이 파손되면 수리비를 부담하며 장토를 관리·유지하였던 것이다.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땅이 파인 곳에 있어 장마와 가뭄에 취약하였다. 이에 도장은 산 계곡 답 5두락을 매득하여 못으로 만들고 물을 저장해서 관개시설로 이용하였다.<sup>52)</sup>

제언을 쌓고 수리하며 장토를 관리했던 도장 조재희는 하동군에 거주한 부재지주였다. 그는 현지에 마름을 두고 장토를 관리하면서 타작제로 지주경영을 하였다. 조재희는 수확이 끝나면 전체 수확량에서 두락당 池貫, 監考例下, 堰築修

49)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請願書, 1908.3.16.

50)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請願書, 1907.9.

51)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5.

52)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請願書, 1908.9.

補時 時作酒食役糧 명목으로 1두 1승, 결세 명목으로 1두 3승, 합 2두 4승씩을 먼저 제한 뒤 나머지 수확량을 작인과 반분하였다.<sup>53)</sup> 제언이 파손되어 일시에 큰 자금이 드는 비용은 도장이 부담했지만 매년 장토 관리에 드는 기본비용은 작인과 반분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타작제로 지주경영을 했던 것이다.

전체 수확량에서 기본비용을 제하고 작인과 반분한 지대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지대량<sup>54)</sup>

(단위: 두락 / 두, 이하 같음)

구분	1905	1906	1907	1908	1909	연도불명	평균	
실경작 두락수	130.5	133	133	134	134.8	133	133.1	
①	지대량	1280.5	2952	2262.5	1637.5	1840	1533.9	1917.7
	두락당 지대량	9.8	22.2	17.0	12.2	13.6	11.5	14.4
②	지대량 재산정	1280.5	1890	2262.5	1637.5	1840	1533.9	1740.7
	두락당 지대량	9.8	14.2	17.0	12.2	13.6	11.5	13.1

1905~1907년 지대량은 조재회가 제출한 추수기에 근거한 것이고, 1908~1909년과 연도불명의 지대량은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수기에 근거한 것이다.<sup>55)</sup> 1908~1909년도 추수기는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1907년 6월 도장을 폐지하고, 1907년 11월 5일부터 탁지부가 역토·둔토와 궁방전의 收租를 담당하였으므로<sup>56)</sup> 탁지부가 궁방전을 관리하면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53)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陳情, 1899.11.

54) 각 필지의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수기에 기재된 두락과 지대량의 합계를 활용하였고, 판독이 가능한 경우는 실제 계산한 합을 활용하였다. 이는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합계가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차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논의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慶尙南道昆陽郡西面永川里秋收記”(1905~1907), “昆陽郡西面內需司庄土秋收記”(1908), “昆陽郡西面內需司畚執賭租實穀成冊”(1909), “昆陽郡西面永川里畚記”(불명).

56) 『韓末近代法令資料集』 V, ‘奏本 經理院收租官을 廢止하고 驛屯土 各宮田畚園林을 派員 調査하고 今年度收租를 度支部에 委託하는 件’, 1907.11.5, 68면.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총 140두락이었는데, 이 가운데 6~7두락 정도가 진전이라 실 경작면적은 133~134두락이었다. 지대량은 1905년이 1,280.5두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sup>57)</sup> 지대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06년으로 2,952두였다. 1906년도 지대량은 조재희가 제출한 추수기에 근거한 것인데 도장정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장정리기관은 도장 배상금을 1906년도 순수확고를 기준으로 책정하였다.<sup>58)</sup> 순수확고는 秋收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가능한 한 實地에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sup>59)</sup> 이에 도장정리기관은 담당자를 실지에 파견해 실제 수확고를 조사했는데,<sup>60)</sup> 추수기와 실지조사한 수확고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확고를 채택하였다.

곤양군 장토를 조사했던 담당자도 조재희가 제출한 추수기를 참조하면서 마름·소작인의 진술과 1907년 이후 작성된 추수기를 참조해서 1906년도 수확고를 파악하였다. 조사 담당자는 도장이 제출한 추수기에 의하면 1906년도 지대량이 2,952두(=147석 12두)이지만 실지조사 결과 1906년은 1909년의 작황과 비슷한 평년작으로 파악하고 지대량을 1,890두(=94석 10두)로 추산하였다.<sup>61)</sup>

도장정리기관은 곤양군 장토 134두락에서 상답을 30두락, 중답을 50두락, 하답을 54두락으로 파악하였다. 상답 1두락의 평년 수확량은 40두(총 1,200두), 중답 1두락은 30두(총 1,500두), 하답 1두락은 20두(총 1,080두)로 파악해 전체 수확량 3,780두의 절반인 1,890두를 지대량으로 추산하였다.<sup>62)</sup> 이를 기준으로 두락당 지대량을 재산정하면 1906년은 14.2두가 되고, 두락당 평균 지대량은 13.1두가 된다.

도장정리기관이 추산한 지대량에 근거하면 조재희는 평균 133.1두락의 장토를 타작제로 경영하며 1,740.7두(=87석 7승락)를 징수했다. 홍수 피해를 입은 1905

57)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慶尙南道昆陽郡西面永川里秋收記”(1905).

58)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74면.

59) 『例規類綴』(奎 20987), 『導掌處分에 관한 事務處理順序』.

60)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74면.

61)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5.

62)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3號 決定』, 算出根基.

년을 제외하면 지대량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여기에서 조재희는 궁방에 16원 75전 4리를 상납했는데 1석의 시가가 4원 70전이었으므로 72.8두(=3석 12.8두)를 상납했던 것이다.<sup>63)</sup>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납가도장인 조재희는 독자적으로 장토를 운영하면서 제언을 새로 쌓고, 파손된 제언을 수리하고, 관개시설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주경영을 하면서 징수물을 거의 독차지한 장토 운영의 주체이자 실질적 소유자였던 것이다.

## ② 작도장이 차정된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

바닷물이 출입하는 곳에 위치한 無主田畝를 절수받은 본 장토는 제언을 쌓고 개간을 했는데, 본 장토의 도장 조영호는 임지무와 홍수재가 築堰作畝해서 연잉군방에 투탁했다고 주장하였다.

작도장인 조영호는 조재희와 마찬가지로 하동군에 거주한 부재지주로 현지에 마름을 두고 장토를 관리하면서 타작제로 지주경영을 하였다. 조영호는 수확이 끝나면 전체 수확량에서 결세를 먼저 제한 뒤 나머지 수확량을 작인과 반분하였다. 결세 이외에 장토 관리에 드는 기본비용인 告祀費 25두와 堤防 수리비 5원은 도장이 매년 정례적으로 지출하였다.<sup>64)</sup> 도장은 장토관리에 드는 기본비용을 부담하면서 제언이 파손되면 수리비도 부담하였다. 1893년 해일로 제언이 크게 파손되자 조영호는 수천 圓을 들여 수축하였고,<sup>65)</sup> 1905년에도 제언이 파손되자 수리비로 200원을 지출하였다.<sup>66)</sup>

조영호가 징수한 지대량은 다음과 같다.

63)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84면.

64)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2號 決定』, 導掌實地調査報告書, 1910.2.4.

65)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2號 決定』, 請願書, 1908.3.16. 導掌實地調査報告書에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1893년)에 대풍 때문에 제방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160원이 들었다고 했다.

66)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2號 決定』, 導掌實地調査報告書, 1910.2.4.

〈표 4〉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지대량<sup>67)</sup>

구분	1904	1905	1906	평균
실경작 두락수	329.9	329.9	329.9	329.9
지대량	3780	2900	3697.5	3459.2
두락당 지대량	11.5	8.8	11.2	10.5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는 총 365.9두락(=18석 5두 9승락)이었는데 여기서 監考畓 9두락, 마름답 27두락을 제한 실 경작면적은 329.9두락이었다. 지대량은 1904년 3,780두, 1905년 2,900두, 1906년 3,697.5두로 1904년과 1906년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905년에 조금 하락하였다. 앞서 살펴본 조재희가 도장으로 있었던 곤양군 소재 내수사 장토가 1905년에 홍수 피해를 입었듯이 동일 지역에 있었던 본 장토 역시 1905년에 홍수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조영호는 329.9두락의 장토를 타조제로 경영하면서 평균 3,459.2두 징수해서 궁방에 13원 74전 6리를 상납했다. 1석의 시가가 4원 70전이었으므로 59.8두(=2석 19.8두)를 상납했던 것이다.<sup>68)</sup> 조영호 역시 독자적으로 장토를 운영하면서 파손된 제언을 수리하며 징수물을 거의 독차지한 장토 운영의 주체이자 실질적 소유자였던 것이다.

### ③ 납가도장이 차정된 영암군 소재 어의궁 장토<sup>69)</sup>

조수가 출입하는 지역에 제언을 쌓고 개간한 본 장토는 영암군 玉始面, 玉終面, 松始面에 분포해 있었다. 이 가운데 송시면 장토는 제언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1895년 마름이 된 金益衡이 1895~1896년에 약 800원을 투여해 제언을 수축하였다.<sup>70)</sup> 이로 인해 마름이었던 김익형은 鄉導掌으로 지칭되며 독자적으로 장

67)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2號 決定』, “昆陽郡兩浦面所在內需司畓中甲辰乙巳丙午三年致秋收記”

68)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84면.

69) 영암군 소재 어의궁 장토는 박성준, 2016a 『18세기 초~20세기 초 納價導掌의 존재양상과 성격』 『역사학보』 229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된 사례이다.

70) 『導掌決定原案』(奎 21654) 2책, 『導第113號 決定』, 聽取書, 1910.3.16.



토를 경영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며 京導掌이라 지칭되었던 하윤홍은 장토 경영에 간여하지 못했다.<sup>71)</sup>

송시면 장토는 타작제로 경영하면서 도장이 결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부담했고, 제방 수리비로 매년 100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옥시면과 옥종면 장토는 도조제로 경영했고 작인이 결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부담했다.<sup>72)</sup>

김익형이 징수한 지대량은 다음과 같다.

〈표 5〉 영암군 송시면 소재 어의궁 장토의 지대량<sup>73)</sup>

구분	1904	1905	1906	평균
실경작 두락수	434.4	434.4	434.4	434.4
지대량	6620	4300	5900	5606.7
두락당 지대량	15.2	9.9	13.6	12.9

영암군 송시면 소재 어의궁 장토는 총 434.4두락이었고 지대량은 1904년 6,620두, 1905년 4,300두, 1906년 5,900두였다. 지대량이 1905년에 조금 하락했지만 1904년과 1906년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두락당 지대량은 1904년 15.2두, 1905년 9.9두, 1906년 13.6두였다. 3개년의 평균 지대량은 5,606.7두였고, 두락당 평균 지

71) 『導掌決定原案』(奎 21654) 2책, 『導第113號 決定』, 聽取書, 1910.3.15.

72) 『導掌決定原案』(奎 21654) 2책, 『導第113號 決定』, 聽取書, 1910.3.15.

73) 영암군 장토의 추수기로는 하윤홍이 작성한 1904·1905·1906년도 玉始面, 玉終面, 松始面 장토의 추수기(『海南郡所在於義宮堰庄賭租冊』(『圖書文績類奎』(奎 22015), 1904·1905), 『海南郡所在於義宮堰庄收賭冊』(『導掌決定原案』 2책, 1906)와 김익형이 작성한 1906년도 松始面 장토와 1906·1907년도 玉始面, 玉終面 장토의 추수기가 있다(『銀所加次秋監冊』(1906), 『玉川面白虎洞』(1906), 『玉川面賭租捧上冊』(1907)(『導掌決定原案』 2책)). 그런데 김익형과 그의 장남인 김순경은 하윤홍의 1906년도 송시면 추수기를 살펴보고 추수기에 기재된 작인의 성명이 실제와 맞지 않지만 추수액은 일치한다고 하였다(『導掌決定原案』(奎 21654) 2책, 『導第113號 決定』, 聽取書, 1910.3.15; 3.16). 하윤홍의 추수기와 김익형의 추수기를 비교해 보면 두락수와 작인은 달랐지만 추수액은 일치했다. 하윤홍이 제출한 추수기는 조작된 가능성이 높지만 추수액은 맞았던 것이다. 이에 송시면 장토의 두락수는 김익형이 작성한 1906년 추수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추수액은 하윤홍이 작성한 3개년의 추수기에 기초해서 살펴본다.

대량은 12.9두였다.

옥시면과 옥중면 장토는 매년 도조로 50석을 징수했는데 1907년 징수액은 56석 1승이었다.<sup>74)</sup> 옥시면과 옥중면 장토 가운데 狐山里 지역만 풍흉에 따라 징수액에 증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을 기준으로 하면 옥시면과 옥중면 장토는 총 232.7두락에서 56석 1승(=1120.1두)을 징수해 두락당 지대량이 4.8두였다.

향도장 김익형은 송시면 장토에서 평균 280석 6.7두(=5,606.7두), 옥시면과 옥중면 장토에서 50석(=1,000두), 총 330석 6.7두를 징수해서 경도장 하윤홍에게 매년 55원을 지급했다.<sup>75)</sup> 1906년도 1석의 시가가 3원 50전이었으므로 15석 14.3두(=314.3두)를 지급했던 것이다.<sup>76)</sup> 여기서 하윤홍은 공방에 12원을 상납했다.<sup>77)</sup>

영암군 소재 어의궁 장토는 경도장이었던 하윤홍이 무너진 제언을 수축하지 않자 마름인 김익형이 제언을 새로 쌓고 향도장이 되어 장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징수물을 거의 독차지했던 것이다.

#### ④ 작도장이 차정된 평택군 소재 내수사 장토

연해 지역에 제언을 쌓고 개간한 본 장토는 浦落과 기간을 반복하였다.<sup>78)</sup> 1902년 11월 작성된 『忠淸南道平澤郡北面所在內需司堰畓查檢量案』에 따르면 평택군 장토는 北面 新換浦와 浦越 院峰坪에 분포해 있었다. 양안에는 두 곳의 장토를 舊基畓으로 표기했는데, 北面 新換浦는 舊基畓 총 21필지에서 기답이 12필지, 17두락이었고, 진전은 9필지로 두락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浦越 院峰坪은 舊基畓 총 29필지에서 기답이 27필지, 144두락(=7석 4두락)이었고, 미기간지가 2필지였다.<sup>79)</sup>

74) 『導掌決定原案』(奎 21654) 2책, 『導第113號 決定』, 聽取書, 1910.3.15: “玉川面賭租捧上冊”(1907).

75) 『導掌決定原案』(奎 21654) 2책, 『導第113號 決定』, 聽取書, 1910.3.15.

76) 『導掌決定原案』(奎 21654) 2책, 『導第113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3.16.

77)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91면.

78)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奎 19300) 26책, 完文謄本, 1902.12.

79)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 26책, “忠淸南道平澤郡北面所在內需司堰畓查檢量案”

그런데 1902년 12월 내수사가 작성한 완문에는 “今新換浦所在 前黑石舊基畝 17두락 新起畝 1석 4두락 今院峰所在 前黑石里舊基畝 7석 7두락 新起畝 2석 1두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80)</sup> 완문에는 양안에 없었던 新起畝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양안의 구기답 가운데 기답의 두락수와 지역명이 완문의 구기답과 일치하듯이 新起畝는 1902년 12월에 새로 기간된 양안의 진전과 미기간지였던 것이다. 본 장토는 기답이 진전이 되기도 했고, 진전이 새로 기간되기도 했던 것이다.

최한응은 진전과 미기간지가 새로 기간된 시점인 1903년 1월에 도장에 차정되었다.<sup>81)</sup> 최한응은 수원군에 거주한 부재지주로 현지에 마름을 두고 타작제와 도조제를 병행하며 지주경영을 하였다.

최한응이 징수한 지대량은 다음과 같다.<sup>82)</sup>

〈표 6〉 평택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타조량

구분	1904	1905	1906	평균
실경작 두락수	156	157	156	156.3
지대량	958	1391	1262	1203.7
두락당 지대량	6.1	8.9	8.1	7.7

타조제로 경영한 평택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지대량은 1904년 958두, 1905년 1,391두, 1906년 1,262두로 1904년은 1,000두 이하였지만 1905년과 1906년은 1,200~1,300두 수준이었다. 두락당 지대량은 1904년 6.1두, 1905년 8.9두, 1906년 8.1두로 평균 7.7두였다.

80)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 26책, 完文謄本, 1902.12.

81) 『[內需司]忠淸道庄土文績』 26책, 1903.1, 도장차첩문기, 內需司 → 崔校理奴興孫.

82)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6號 決定』, “平澤北面院峯里導掌畝秋收記”(1904, 1905), “平澤北面院峯內需司導掌畝秩”(1906)

〈표 7〉 평택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도조량

구분	1904	1905	1906	평균
실경작 두락수	67	61	30	52.7
필지수	8	7	5	6.7
지대량	126	150	70	115.3
두락당 지대량	1.9	2.5	2.3	2.2

최한응이 도조제로 경영한 장토는 5~8필지 정도였다. 최한응은 타작제와 도조제를 병행했지만 타작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도조제로 경영한 필지는 1904년 8필지, 1905년 7필지, 1906년 5필지로 매년 감소했고, 두락수도 1904년 67두락에서 1906년 30두락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한 3필지 가운데 1필지는 1905년 타조제로 전환되었고, 다른 1필지는 1906년에 포락되었고, 나머지 1필지는 두락수가 1석 5두락(1904년, 1905년)에서 2석 1두락(1906년)으로 증가하면서 新起畝으로 처리되어 도조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 외 도조제로 경영한 다른 5두락의 1필지는 1905년에 3두락, 1906년에 4두락이 浦落되었다. 도조제로 경영한 장토는 타조제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포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기간 중에 있었던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이다.

도조제로 경영한 장토가 불안정했던 이유는 이들 장토가 이전에 진전이거나 미기간지였기 때문이다. 양안에 北面 新換浦는 舊基畝 총 21필지에서 기답이 12필지, 17두락이었는데, 이 장토는 타작제로 경영되고 있었다.<sup>83)</sup> 이에 반해 양안에 기재된 진전과 미기간지는 총 11필지였는데, 1904년도 추수기에 도조제로 경영한 답이 8필지였다. 최한응은 기답인 상태로 유지되었던 토지는 타조제로 경영하면서, 새로 기간한 답은 도조제로 경영했던 것이다.

도조제는 장기간 동안 일정액의 지대를 수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대량의 변동이 거의 없다. 그런데 평택군 장토는 도조제로 경영한 각 필지의 두락당 지대량이 달랐을 뿐 아니라, 동일한 필지의 도조량도 해마다 달랐다. 가령 金允京

83) 1904년도 추수기에는 浦越 新換浦의 답이 1필지, 17두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양안의 12필지를 1필지로 묶어서 기재한 것이다.

이 경작한 3두락의 도조량이 1904년은 6두, 1905년은 9두, 1906년은 5두였다. 그래서 도조제로 경영한 장토의 두락당 지대량이 1904년 1.9두, 1905년 2.5두, 1906년 2.3두로 매해 달랐던 것이다. 평택군 장토에서 도조제로 경영한 필지는 기간 된지 얼마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년 작황을 살펴보고 지대량을 책정했던 것이다. 추수기에는 이들 장토의 지대 징수 방식을 “賭地”라고 기재했지만 실상은 執租 방식이었던 것이다.

평택군 장토는 안정적인 토지는 타조제로 경영하고, 불안정한 토지는 도조제로 경영하면서 장토가 안정화되면 타조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래서 두락당 도조량이 타조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것이다.

도장 최한응은 타조제와 도조제를 병행하면서 종자와 결세를 비롯해 장토 관리에 드는 기본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sup>84)</sup> 지출 항목에 秋收官 비용으로 2석 15두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최한응은 현지에 마름을 두고 장토를 관리하면서도 추수기가 되면 추수의 정확성을 위해 추수관을 따로 내려 보냈던 것이다.

최한응은 평택군 장토에서 1,300여 두를 징수하고 내수사에 매년 100냥을 상납했다.<sup>85)</sup> 1906년도 1석의 시가가 3원(=30냥)이었으므로 100냥은 66.7두(=3석 6.7두)에 해당된다.<sup>86)</sup>

내수사는 1903년 최한응을 도장에 차정했고, 평택군 장토와 관련된 도장권매매문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전에는 내수사가 직접 장토를 경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내수사는 최한응을 도장에 차정하기 이전인 1813년에 본 장토에서 “租 3석 代錢 若干額”을 징수하고 있었다.<sup>87)</sup> 이는 최한응이 내수사에 상납하기로 약정한 금액 100냥(=3석 6.7두)과 거의 일치한다. 최한응이 1,300여 두를 징수했던 장토를 내수사가 직접 경영하면서 매년 3석만을 징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13년의 조 3석은 내수사가 직접 장토를 경영하면서 징수했던 것이 아니라 도장에게 상납받았던 액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보면 1903년

84)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6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1.27.

85) 『[內需司]忠淸道庄土文續』 26책, 1903.1. 도장차집문기. 內需司 → 崔校理奴興孫.

86)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6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1.27.

87)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6號 決定』, 認定書, 1909.4.16.

이전부터 최한응은 도장이었는데 그가 평택군 장토의 진전과 미기간지를 개간하자 내수사는 장토를 개간했음을 확인하는 완문을 작성해 주면서 1903년 1월에 도장에 다시 차정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도장 최한응은 장토를 타조제로 경영하면서 진전이나 미기간지를 새로 개간했고, 새로 개간된 불안정한 상태의 토지는 도조제로 경영하면서 장토가 안정화되면 타작제로 전환하며 지주경영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 ⑤ 작도장이 차정된 임천·한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

사패지인 본 장토는 금강에 접한 노전을 기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노전을 기간한 주체는 앞 사례들과 달리 도장이 아닌 민들이었다. 민들은 본 장토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장토를 轉相賣買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 장토에는 도장을 따로 두지 않고 마름인 김이현이 도장을 겸직하였다.<sup>88)</sup> 김이현은 『各宮導掌文券還收簿』에 작도장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마름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민들이 장토의 실질적 소유자였기 때문에 마름겸 도장이었던 김이현은 장토 경영에 간여하지 못했다. 김이현은 도장의 수입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답 1두락에 1냥의 비율로 446냥, 노전에서 108냥 9전, 합계 554냥 9전(=55원 49전)을 징수했다. 1906년도 1석의 시가가 3원 20전이었으므로 15석 17두(=317두)를 징수했던 것이다.<sup>89)</sup> 여기에서 궁에 200냥을 상납하였고, 장토 경영과 관련된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sup>90)</sup>

임천·한산군 장토는 1905년 12월 금강이 범람해 모든 답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서 1906년과 1907년은 수확이 없었고, 1908년에 1두락에 2두 내지 3두를 수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년의 수확량은 답 1두락에 7두 내지 8두 정도였다. 임천·한산군 장토가 446두락(=22석 6두락)이었으므로 평년에는 156석에서 178석을 수확했고, 여기서 마름겸 도장이었던 김이현은 15석 17두를 징수했던 것이다.<sup>91)</sup>

88)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1號 決定』, 聽取書, 1910.2.19.

89)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1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18.

90)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1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18.

임천·한산군 장토는 민들이 실질적인 소유자였기 때문에 도장은 장토 경영에는 간여하지 못한 채 궁 상납량을 징수하는 역할에 그쳤다.

## 2) 매득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 ⑥ 납가도장이 차정된 홍산·은진군 소재 수진궁 장토

본 장토는 궁방과 도장이 합자하여 매득했던 것이다. 19세기 초 서울에 거주했던 도장 박명환 집안은 1860년대에 홍산군으로 이주하였다.<sup>92)</sup> 홍산군에 거주하면서 홍산군 장토는 직접 관리하였고, 은진군 장토는 마름을 두고 관리하였다.

홍산·은진군 장토의 추수기는 1906년, 1908년, 연도불명의 3건이 남아 있다.<sup>93)</sup> 1906년도 추수기는 홍산군 장토만 기재되어 있고, 1908년과 연도불명의 추수기는 홍산군과 은진군 장토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1906년도 추수기의 지대량이 도장정리기관에서 작성한 導掌實地調查報告書의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살펴본다.<sup>94)</sup>

〈표 8〉 홍산군 소재 수진궁 장토의 지대량

구분	1906①	1906②	1908	연도불명
실경작 두락수	880	713	842	839.5
수확량	15365	13835		
지대량	5106	4831	7476	7283
두락당 수확량	17.5	19.4		
두락당 지대량	5.8	6.8	8.9	8.7
지대 비율	33.2%	34.9%		

\* 1906①: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06②: 추수기.

\* 1906①의 실경작 두락수는 전체 두락수임.

91)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1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18.

92)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聽取書, 1910.2.21.

93)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恩津鴻山兩郡秋收記”(1906, 1908, 연도불명). 연도불명은 1909년으로 추정된다.

94)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21(홍산군), 1910.2.5(은진군).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06년도 홍산군 장토는 전 45두 5승락(=2석 5.5두락), 답 834두 5승락(=41석 14.5두락), 합 880두락(=44석락)에서 15,365두(=768석 5두)를 수확해서 5,106두(=255석 6두)를 지대로 징수했다. 전체 수확량에서 약 1/3(33.2%)을 지대로 징수했던 것이다. 두락당 수확량과 지대량은 17.5두와 5.8두이다.

1906년도 추수기의 전체 두락수는 816.5두락(=40석 16.5두락)이었고 실경작 두락수는 713두락(=35석 13두락)이었다. 여기서 13,835두(=691석 15두)를 수확해서 4,831두(=241석 11두)를 지대로 징수했다. 전체 수확량에서 약 1/3(34.9%)을 지대로 징수했던 것이다. 두락당 수확량과 지대량은 19.4두와 6.8두이다.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비해 수확량은 적었지만 실경작 두락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두락당 수확량과 지대량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수확량에서 징수한 지대 비율은 약 1/3로 거의 비슷했다.

1908년과 연도불명의 추수기는 전체 수확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대량만 기재되어 있다. 두 시기의 지대량은 7,476두(=373석 16두)와 7,283두(=364석 3두)로 1906년보다 많았다.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홍산군 장토는 1908년과 1909년은 풍작이어서 수확량이 1천석 이상이었고 평년은 850석 정도라고 하였다. 1906년은 흉년이 들어 평년작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표 9〉 은진군 소재 수진궁 장토의 지대량

구분	1906	1908	연도불명	평균
실경작 두락수	122.7	130	137	129.9
수확량	2320			
지대량	600	1060	1005	888.3
두락당 수확량	18.9			
두락당 지대량	4.9	8.2	7.3	6.8
지대 비율	25.9			

\* 1906년: 導掌實地調查報告書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06년 은진군 장토는 122두 7승락(=6석 2두 7승락)에서 2,320두(=116석)를 수확해서 600두(=30석)를 지대로 징수하였다. 전체 수확량에서 약 1/4(25.9%)을 지대로 징수했던 것이다. 두락당 수확량과 지대량은 18.9두와 4.9두이다.

1908년과 연도불명의 추수기는 전체 수확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대량만 기재되어 있다. 두 시기의 지대량은 1,060두(=53석)와 1,005두(=50석 5두)로 1906년보다 많았다. 두락당 지대량은 8.2두와 7.3두이다.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은진군 장토는 1908년과 1909년은 풍작이어서 수확량이 150석 이상이었고 평년은 130석 정도라고 하였다. 은진군 장토도 1906년은 흉작이어서 수확량이 평년작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박명환이 장토를 경영했던 시기인 홍산군 장토의 1906년 추수기에 징수방식이 “賭租”라고 기재되어 있고, 은진군 장토도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賭租 30석”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박명환은 홍산·은진군 장토를 도조제로 경영했던 것으로 보인다.<sup>95)</sup>

홍산·은진군 장토는 결세와 종자를 비롯한 기타 비용을 모두 작인이 부담했고, 도장은 은진군 장토에서 看坪留糧 3석, 結稅 1석(不知處畝에 대한 결세), 木材 대금 50전만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sup>96)</sup>

도장 박명환은 홍산·은진군 장토를 도조제로 경영하면서 궁에는 345냥을 상납하였다. 1906년도 1석의 시가가 은진군은 3원 20전(=32냥), 홍진군은 2원 70전(=27냥)이었으므로 345냥은 11~13석 정도가 된다.<sup>97)</sup> 도장 박명환은 도조제로 장토를 경영하며 징수물을 거의 독점했던 것이다.

95) 추수기와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賭租”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대비용이 1/3 또는 1/4 수준이라 도조제로 파악했다. 그러나 박명환이 장토를 경영했던 1906년 이전 시기의 지대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집조제로 경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6)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21(홍산군);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5(은진군).

97)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7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21(홍산군);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2.5(은진군).

## ⑦ 작도장이 차정된 덕산·예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

1696년 崔貴人房(=육상궁)에서 매득한 본 장토의 도장 김낙여는 경기도 음죽군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로 현지에 마름을 두고 장토를 경영하였다.<sup>98)</sup> 1904년도 추수기에 따르면 덕산군 장토는 답 44두락에서 私耕 3두락을 제한 39두락은 타조제로 경영했고, 나머지 답 2두락과 두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39는 도조제로 경영했다. 예산군 장토는 답 42두락에서 私耕 2두락을 제한 40두락은 타조제로 경영했고, 전 1.5일경은 도조제로 경영했다.<sup>99)</sup> 타조제가 중심을 이루면서 전은 도조제로 경영했던 것이다.

덕산·예산군 장토의 지대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김낙여가 제출한 1904~1906년도 추수기 3건과 1906년도 징수 총액만 기록한 추수기, 1906년도 내용을 조사한 도장실지조사보고서가 있다.<sup>100)</sup> 그런데 이들 자료의 1906년도 지대량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함께 비교해 본다.

〈표 10〉 덕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의 지대량

구분	1904	1905	1906①	평균	1906②	1906③
실경작 두락수	39	39	40	39.3	41	40
지대량	645	459	607	570.3	412	207
두락당 지대량	16.5	11.8	15.2	14.5	10.0	5.2

\* 1906①: 추수기, 1906②: 총액 추수기, 1906③: 導掌實地調查報告書.

\* 1906③에는 타조제로 경영한 장토의 두락수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1906①의 두락수를 따름.

\* 1906②는 타조와 도조가 구분되지 않아 도조로 경영한 답 2두락의 지대량이 포함되었음.

98)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8號 決定』, 報告書, 1908.12.25, 면천재무서 → 공주재무감독지국.

99)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8號 決定』, “毓祥宮禮德山郡李判書樓洞宅秋收記”(1904)

100)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8號 決定』, “毓祥宮禮德山郡李判書樓洞宅秋收記”(1904), “毓祥宮禮德山李判書宅秋收記”(1905), “毓祥宮禮德山李判書宅秋收記”(1906), “毓祥宮禮德山郡李判書樓洞宅秋收記”(1906, 총액추수기),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3.5(덕산군)·1910.3.15(예산군).

추수기에 기재된 덕산군 장토의 지대량은 1904년 645두, 1905년 459두, 1906년 607두로 1904년과 1906년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905년은 조금 하락하였다. 그런데 징수 총액을 기재한 추수기의 1906년도 지대량은 412두였고, 도장실지조사보고서는 207두로 추수기의 약 1/3 수준이었다.

〈표 11〉 예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의 지대량

구분	1904	1905	1906①	평균	1906②	1906③
실경작 두락수	40	40	40	40.0	38	42.5
지대량	367	287	269	307.7	299	230
두락당 지대량	9.2	7.2	6.7	7.7	7.9	5.4

\* 1906①: 추수기, 1906②: 총액 추수기, 1906③: 導掌實地調查報告書.

추수기에 기재된 예산군 장토의 지대량은 1904년 367두, 1905년 287두, 1906년 269두로 1905년과 1906년 지대량이 모두 하락했다. 두락당 평균 지대량은 7.7두였다. 그런데 1906년도 징수 총액을 기재한 추수기는 지대량이 299두로 추수기보다 30두가 많았고, 도장실지조사보고서는 230두로 39두가 적었다. 도장실지조사보고서의 예산군 지대량도 추수기보다 적었지만 덕산군만큼 크게 차이하지는 않았다.

덕산·예산군 장토는 기본적으로 타조제로 경영했기 때문에 종자와 결세는 도장이 부담하였다. 도장은 장토경영비용으로 결세 5석 10두, 종자 2석 11두, 공상납 5석, 船價 4석 10두, 합 17석 11두를 지출하였다.<sup>101)</sup>

김낙여는 부채지주로 현지에 마을을 두고 장토를 관리했지만 추수기에는 직접 장토에 가서 수확하였고, 작인 黜陟과 같은 일들도 직접 처리하였다.<sup>102)</sup> 김낙여는 부채지주였지만 직접 장토를 운영한 경영 주체였던 것이다.

101)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8號 決定』, “毓祥宮禮德山郡李判書樓洞宅秋收記”(1904).

102)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8號 決定』, 報告書, 1908.12.25, 면천재무서 → 공주재무감독지국.

## 3) 사여된 둔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

## ⑧ 납가도장이 차정된 창원군 소재 용동궁 장토

창원군 소재 용동궁 장토는 1결당 免稅條 100두와 土稅條 100두 합 200두를 징수한 永作宮屯의 기준이 되는 장토였다.<sup>103)</sup> 용동궁은 효종조에 둔토를 사여받고 직접 경영을 하다가 1722년 도장을 차정하였다.<sup>104)</sup> 그런데 1777년 屯民 鄭碩觀, 金弼瑞 등이 창원군 장토를 자신들의 토지라고 呈訴하면서 궁방과 민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sup>105)</sup> 창원군 장토는 민들이 토지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직접 장토를 경영했기 때문에 도장은 장토 경영에 간여하지 못했다.

도장은 창원군 장토 전 199두 9승락, 답 1,603두 4승락, 垆田 103두 9승락에서 302석 16두 3승(=6,056.3두)을 징수하였다.<sup>106)</sup> 징수량 302석 16두 3승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59원 85전(1석당 시가 3원 50전)이다.<sup>107)</sup> 여기서 도장은 궁방에 매년 59원 60전(=596냥)을 상납했는데, 1905년 궁에서 상납량을 5배로 인상해서 298원(=2,980냥)을 상납하였다.<sup>108)</sup>

도장 유성표는 장토 경영에는 간여하지 못한 채 장토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작인에게서 상납량을 징수해서 궁방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획득하는 수세청부업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도장 유성표 역시 본인은 장토를 매득한 것이 아니라 장토에서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도장권을 매득했다고 하였다.<sup>109)</sup>

103) 『[內需司]庄土文績』(奎 19307) 18책, 1785.8, 龍洞宮手本.

104) 『慶尙道庄土文績』 3책, 1722(壬寅).9, 導掌差帖文記, 龍洞宮 → 盧世璣.

105) 『[內需司]庄土文績』 18책, 1785.8, 啓文, 내수사.

106)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4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1.29: 『龍洞宮稅租捧上冊』(1906년)에는 295석 18두 7승으로 기재되어 있다.

107)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4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1.29.

108)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4號 決定』, 請願書, 1907.9.

109)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64號 決定』, 聽取書, 1909.7.2.

4) 記上田畝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⑨ 작도장이 차정된 온양·연기군 소재 수진궁 장토

본 장토는 記上田畝으로 파악되었지만 도장 김중연과 김종식은 김중연의 5대 조가 이흥문과 함께 매득해서 수진궁에 투탁했다고 주장하였다.<sup>110)</sup> 온양·연기군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인 김중연은 서울에 거주하고, 김종식은 양천군에 거주한 부제지주로 현지에 마름을 두고 장토를 관리하였다.<sup>111)</sup> 온양군 장토는 답은 타조제, 전은 도조제로 경영했고, 연기군 장토는 답과 전을 모두 도조제로 경영했다.

온양·연기군 장토의 지대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1905~1906년도 추수기가 있다.<sup>112)</sup> 그런데 추수기의 1906년도 지대량이 도장정리기관에서 작성한 도장실지조사보고서와 차이가 있었으므로 함께 비교해 본다.<sup>113)</sup>

〈표 12〉 온양군과 연기군 장토의 지대량

구분	온양군						연기군					
	답(타조)			전			답			전답		
	1905	1906①	1906②	1905	1906①	1906②	1905	1906①	1906②	1905	1906①	1906②
실경작 두락수	93	98	98	27	27	25	16	16	22	18	18	9
지대량	917	1018	762	109	109	29	130	130	90	50	50	19
두락당 지대량	9.9	10.4	7.8	4.0	4.0	1.2	8.1	8.1	4.1	2.8	2.8	2.1

\* 1906①: 추수기, 1906②: 導掌實地調查報告書.

\*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1906년 온양군 장토의 답(타조)은 117두락이었으나 솜乃畝 등을 계산해 추수기의 두락수를 따랐음.

110)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9號 決定』, 理由.

111)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9號 決定』, 『導第60號 決定』, 1910.5.25: 聽取書, 1910.3.20.

112)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9號 決定』, 『導第60號 決定』, “壽進宮溫陽燕岐郡秋收記”(1905), “溫陽宮畝秋收冊”(1906)

113)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9號 決定』, 『導第60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1.28(연기군), 1910.3.30(온양군).

타조제로 경영한 온양군 장토는 총 117두락이었는데 솜乃畝과 지대를 징수하지 않은 토지를 제외한 실경작 두락수는 1905년 93두락, 1906년 98두락이었다. 추수기의 지대량은 1905년 917두, 1906년 1,018두로 두락당 지대량이 9.9두와 10.4두였다. 그런데 도장실지조사보고서는 1906년도 지대량을 762두로 파악해 두락당 지대량이 7.8두였다.

도조제로 경영한 전 27두락에서는 109두를 징수해 두락당 지대량이 4두였는데, 도장실지조사보고서는 1906년도 지대량을 29두로 파악해 두락당 지대량이 1.2두였다.

도조제로 경영한 연기군 장토는 1905년과 1906년 모두 답 16두락에서 130두를 징수했고, 전 13두락과 답 5두락에서 50두를 징수했다.<sup>114)</sup> 답은 두락당 지대량이 8.1두, 전은 2.8두였다. 그런데 도장실지조사보고서는 1906년도 답 지대량을 90두, 전 지대량을 19두로 파악해 두락당 지대량이 4.1두와 2.1두로 차이가 있었다.

도장실지조사보고서의 지출내역에 따르면 온양군은 마름료 5석, 水稅 15두, 종자 4석, 연기군은 마름료 2석, 考卜價色吏料 13전을 지출했다. 온양군 장토는 타조제로 경영했기 때문에 도장이 종자를 지급했지만, 연기군은 도조제로 경영했기 때문에 마름료 외의 다른 지출은 없었다. 궁에는 37냥 2전(=3원 72전)을 상납했는데, 1906년 온양군의 1석 시가가 2원 35전, 연기군이 3원이었으므로 약 1~2석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sup>115)</sup>

#### 4. 삼남지역 궁방전 도장의 지주경영 성격

삼남지역 9개의 장토에 도장이 결합된 양상을 1) 절수·사여지를 개간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①·② 곤양, ③ 영암, ④ 평택, ⑤ 임천·한산 총 5곳), 2) 매득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⑥ 홍산·은

114) 전 13두락과 답 5두락에서 답 5두락의 지대량은 전 5두락과 합산해서 표기되어 있다.

115) 『導掌決定原案』(奎 21669), 『導第59號 決定』, 『導第60號 決定』,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1.28; 導掌實地調查報告書, 1910.3.20;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84면.

진, ⑦ 덕산·예산 총 2곳), 3) 사여된 둔도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⑧ 창원), 4) 記上田畓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⑨ 온양·연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도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삼남지역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과 지주경영 양상

도장 유형	번호	군	궁방	도장	궁방전 발생기원	도장 주장	경영 주체	지대징수	비용부담	거주
납가도장	1	곤양	내수사	조재희	절수 개간	매득	도장	타조	작인 공동	부재
	3	영암	어의궁	하윤홍	(절수) 개간	×	도장	타조/도조	타조 도장/도조 작인	현지
	6	홍산·은진	수진궁	박명환	매득	투탁	도장	도조	작인	재지/부재
	8	창원	용동궁	유성표	둔토 사여	납가	민	×	×	×
작도장	2	곤양	내수사	조영호	절수 개간	투탁	도장	타조	결세 공동/나머지 도장	부재
	4	평택	내수사	최한응	(절수) 개간	×	도장	타조/도조	도장	부재
	5	임천·한산	육상궁	김이현	사여 개간	마름검직	민	×	×	×
	7	덕산·예산	육상궁	김낙여	매득	투탁	도장	타조/도조	도장	부재
	9	온양·연기	수진궁	김종식	記上田畓	투탁	도장	타조/도조	타조 도장/도조 작인	부재

도장은 납가도장과 작도장으로 구분되었는데 납가도장이 차정된 궁방전의 발생기원은 절수, 매득, 사여였고, 작도장은 절수, 사여, 매득, 記上田畓이었다. 납가도장과 작도장이 차정된 궁방전의 발생기원은 차이가 없었다. 도장이 궁방전에 차정되는 방식은 특정 유형의 도장이 특정 궁방전에 차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기원에 관계없이 모든 궁방전에 차정되었던 것이다.

지주경영 방식은 납가도장은 타조제 2곳, 도조제 2곳이었고, 작도장은 타조제 4곳, 도조제 3곳이었다. 지주경영 방식도 도장의 유형이나 궁방전의 발생기원과 상관없이 장토 운영주체의 경영 방식에 따라 선택되었던 것이다. 지주경영 방식은 주로 논은 타조제, 밭은 도조제로 경영되어 타조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타조제로 경영한 장토는 결세와 종자를 비롯해 장토운영에 드는 기본비용을 도장이 지출했고, 도조제는 작인이 비용을 부담하였다. 타조제로 경영한 장토는 기본적으로 도장이 비용을 부담했지만 곤양군의 납가도장은 결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작인과 공동 부담했고, 곤양군의 작도장도 결세를 작인과 공동 부담하면서 나머지 비용만 도장이 부담하였다.

도장이 차정된 공방전과 지주경영 방식이 도장의 유형 및 공방전의 발생기원과 관계가 없었듯이 도장의 유형과 공방전의 발생기원이 도장의 지주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도장의 발생기원은 작도장과 납가도장으로 달랐지만 도장이 갖는 권한과 성격은 동일했던 것이다.

도장이 지주경영에 제약을 받은 경우는 창원군 소재 용동궁 장토와 임천·한산군 소재 육상궁 장토처럼 민들이 실질적 소유자이자 장토운영의 주체였던 장토였다. 이런 경우 도장은 장토 운영에 간여하지 못한 채 상납량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수세청부업자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방전과 도장이 결합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도장의 지주경영의 특징은 1) 도장은 자신이 운영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장토를 관리·경영하면서 지대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공방은 장토 경영에 전혀 간여하지 못한 채 지대의 극히 일부만을 상납받았다. 2) 도장은 제언을 쌓고, 제언이 파손되면 비용을 들여 수리하고, 진전이나 미기간지는 개간하며 장토를 유지·확대하였다. 3) 도장의 거주지는 장토가 있는 현지에 거주한 경우가 2곳(납가도장 2), 다른 곳에 거주한 경우가 5곳(작도장 4, 납가도장 1)으로 부재지주의 비중이 높았다. 부재지주인 도장은 현지에 마름을 두고 관리하면서도 추수 시기가 되면 본인이 직접 내려가거나 秋監을 내려 보내 수확을 확인하였다. 4) 도장은 주로 답은 타조제, 전은 도조제로 지주경영을 하였다. 5) 장토경영에 드는 기본비용은 타조제는 도장이 주로 부담하고 도조제는 작인이 부담하였다.

이러한 삼남지역 공방전 도장의 지주경영 양상은 사실상 일반 사적 지주와 동일한 모습이다. 도장은 민전과 구분되는 공방전을 경영했지만 공방의 소속 직원이 아닌 일반 민으로서 공방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했기 때문에 지주경영 방식도 일반 사적 지주와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장이 징수한 지대량은 사적 지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본다.

〈표 14〉 궁방전 도장과 사적 지주의 지대량·수확량 비교<sup>116)</sup>

구분	지역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불명	평균 지대량	징수방식	수확량	구간
도장	영암2				4.8				4.8	도조	14.4	11~15
	예산	9.2	7.2	6.7					7.7	타조	15.4	
	평택	6.1	8.9	8.1					7.7	타조	15.4	
	온양		9.9	10.4					10.2	타조	20.3	16~20
	곤양2	11.5	8.8	11.2					10.5	타조	21.0	21~25
	은진			6.5		8.2		7.3	7.3	도조	22.0	
	연기		8.1	8.1					8.1	도조	24.3	
	홍산			6.8		8.9		8.7	8.1	집조	24.4	
	영암1	15.2	9.9	13.6					12.9	타조	25.8	
	곤양1		9.8	22.2	17	12.2	13.6	11.5	14.4	타조	28.8	26~30
덕산	16.5	11.8	15.2					14.5	타조	29.0		
사적 지주	단성2	6.2	4.5	7.9	6.4	6.7			5.3	지정	15.9	11~15
	영암	6.1	5.9	6.1	5.1	5.6	4.5		5.6	도조	16.7	16~20
	나주1	13.2				11.7	9.5		6.9	집조	20.6	
	나주2	8.2	7.9	7.8	7.4	7.3	7.3		7.7	집조	23.0	21~25
	단성1	12.7	9.9	13.2	12.4	14.6	11.3		12.4	타조	24.7	

도장과 사적 지주가 징수한 지대량을 비교하기 위해 두락당 지대량을 지주경영 방식을 반영해서 수확량으로 환산하였다.<sup>117)</sup> 환산한 수확량을 보면 도장은 두락당 수확량이 11~15두가 3곳(27.3%), 16~20두가 1곳(9.1%), 21~25두가 5곳(45.5%), 26~30두가 2곳(18.2%)이었다. 사적 지주는 11~15두가 1곳(20%), 16~20두가 2곳(40%), 21~25두가 2곳(40%)이었다. 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116) 사적 지주 출전: 나주1·영암(김건태, 2004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나주2(김건태, 2005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부제지주지 경영』 『대동문화연구』 49), 단성1·2(정진영, 2008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在村兩班地主家の 농업경영: 경상도 단성 김인섭가의 병작지 경영을 중심으로』(2) 『역사와경계』 67).

117) 타작제는 지대량을 수확량의 1/2, 집조제와 도조제는 1/3로 평가하였다.

11~20두 구간은 도장이 36.4%, 사적 지주가 60%, 21~30두 구간은 도장이 63.7%, 사적 지주가 4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두 이하는 사적 지주의 비중이 높고, 21두 이상은 도장의 비중이 높았다. 구간별 분포를 통해서도 도장의 지대량이 사적 지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도장과 사적 지주의 두락당 수확량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도장이 21.9두, 사적 지주가 20.2두로 1.7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21두 이상의 구간은 도장의 비중이 높았지만 도장과 사적 지주가 징수한 지대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도장정리기관은 도장을 정리하면서 1906년도 순수확량을 도장배상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순수확량은 도장 추수기를 참조하면서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했는데 추수기와 실지조사한 수확고가 ① 곤양군, ⑥ 홍산·은진군, ⑦ 덕산·예산군, ⑨ 온양·연기군처럼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확고를 기준으로 지대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도장이 제시한 지대량과 차이가 있었다. 이에 도장정리기관이 조정한 1906년도 지대량을 기준으로 사적 지주의 지대량과 비교해 본다.

〈표 15〉 도장정리기관이 조정한 1906년도 지대량과 수확량<sup>118)</sup>

지역	지대량	수확량	구간
덕산	5.2	10.4	6~10
예산	5.4	10.8	
연기	4.1	12.3	11~15
영암2	4.8	14.4	
온양	7.8	15.6	
평택	8.1	16.2	16~20
은진	7.1	21.3	21~25
곤양2	11.2	22.4	
홍산	7.9	23.7	
영암1	13.6	27.2	26~30
곤양1	14.2	28.4	

118) 홍산군과 은진군은 도장실지조사보고서에 1906년이 흉작이라면서 평년작의 지대량을 제시했기 때문에 평년작의 지대량을 적용했음.

도장정리기관이 조정한 1906년도 지대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확량의 분포는 6~10두가 2곳(18.2%), 11~15두가 3곳(27.3%), 16~20두가 1곳(9.1%), 21~25두가 3곳(27.3%), 26~30두가 2곳(18.2%)이었다. 이를 도장 추수기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구간은 변화가 없었지만 10두 이하가 0곳에서 2곳으로 증가했고, 21~25두 구간이 5곳에서 3곳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10두 이하 구간이 0%에서 18.2%로 증가했고, 21~30두 구간이 63.7%에서 45.5%로 감소했다.

이를 기준으로 사적 지주와 비교해 보면 10두 이하 구간은 도장 18.2%, 사적 지주 0%, 11~20두 구간은 도장 36.4%, 사적 지주 60%, 21~30두 구간은 도장 45.5%, 사적 지주 40%였다. 여전히 20두 이하는 사적 지주의 비중이 높고 21두 이상은 도장의 비중이 높지만 둘의 간격이 좁아졌다.

도장과 사적 지주의 두락당 수확량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도장이 18.4두, 사적 지주가 20.2두로 사적 지주의 두락당 평균 수확량이 1.8두 높았다. 사적 지주의 두락당 평균 수확량이 높아졌지만 1.8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도장정리기관이 조정한 지대량을 기준으로 해도 도장과 사적 지주의 지대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장은 17세기 중반 경 왕실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던 궁방전을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존재였다. 17세기 발생 초기의 도장은 궁방에 役을 서는 장토 관리자의 성격이었다.<sup>119)</sup> 그러나 도장은 장기간에 걸쳐 장토 관리에 필요한 물력을 투여하고 독자적으로 장토를 운영하면서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도장은 궁방전을 침해하며 실질적인 소유자로 전환하였다.<sup>120)</sup> 궁방전의 관리자 위치에서 실질적 소유자로 전환했던 도장은 부재지주가 중심을 이루면서 지주경영 방식에서도 사적 지주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도장은 제언을 쌓고 파손된 제언을 수리하고 미기간지를 개간하며 적극적으로 장토를 운영하면서 지주경영을 강화해 갔다.

119) 박성준, 2017 『17~18세기 궁방전에서 導掌의 발생과 역할』 『역사문화연구』 64, 45-48면, 60-67면.

120) 박성준, 2015 『17세기 후반~20세기 초 궁방전에서 作導掌의 발생 기원과 작도장권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사연구』 168; 2016a 앞의 논문; 2016b 『17세기 후반~20세기 초 役價導掌의 발생기원과 위상 변화: 載寧郡 餘勿坪 장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3.

19세기 말~20세기 초 궁방전의 지주경영에서 중심적이며 보편적인 존재로서 일반 사적 지주에 비견되는 존재는 해체되어 가고 있었던 왕실지주가 아니라, 이들을 해체시키고 지주경영을 강화해 갔던 도장이었던 것이다. 궁방전 지주경영의 중심적 존재가 도장이었듯이 19세기 말~20세기 초 지주제는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 5. 맺음말

궁방전의 지주경영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궁방전의 왕실지주를 정체적인 성격으로 평가하고, 왕실지주가 부재지주임을 근거로 왕실지주의 정체성을 일반 부재지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그런데 궁방전에는 왕실지주와 아울러 도장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궁방전에 나타난 지주경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장의 지주경영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궁방전은 발생기원에 따라 크게 給價買得地, 折受·賜與地, 民結免稅地로 구분되고, 도장도 발생기원에 따라 작도장, 납가도장, 역가도장으로 구분되었다. 궁방전과 도장의 발생기원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도장의 지주경영 양상을 도장과 궁방전의 발생기원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삼남지역 궁방전에 도장이 결합된 유형은 1) 절수·사여지를 개간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2) 매득한 장토에 납가도장·작도장이 차정된 유형, 3) 사여된 둔토에 납가도장이 차정된 유형, 4) 記上田畝에 작도장이 차정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궁방전과 도장이 결합된 유형에서 나타난 특징은 특정 유형의 도장이 특정 궁방전에 차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은 발생기원에 관계없이 모든 궁방전에 차정되었다. 도장의 지주경영도 궁방전과 도장이 결합된 유형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이었다. 도장과 궁방전의 발생기원이 도장의 지주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궁방전과 도장이 결합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도장의 지주경영의 특

장은 1) 도장은 자신이 운영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장토를 관리·경영하면서 지대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2) 도장은 제언을 쌓고, 제언이 파손되면 비용을 들여 수리하고, 진전이나 미기간지는 개간하며 장토를 유지·확대하였다. 3) 도장은 부재지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재지주인 도장은 현지에 마름을 두고 관리하면서 추수 시기가 되면 본인이 직접 내려가거나 秋監을 내려 보내 수확을 확인하였다. 4) 도장은 주로 답은 타조제, 전은 도조제로 경영하였다. 5) 장토경영에 드는 기본비용은 타조제는 도장이 주로 부담하고 도조제는 작인이 부담하였다. 이러한 도장의 지주경영은 사실상 일반 사적 지주와 동일한 모습이었고 징수한 지대량도 일반 사적 지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궁방전 경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장은 궁방전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장토 운영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장토 운영을 통해 지주경영을 강화해 가고 있었다. 도장은 부재지주가 중심을 이루면서 지주경영 방식과 지대량은 사적 지주와 차이가 없었듯이, 19세기 말~20세기 초 궁방전의 지주경영에서 중심적이며 보편적인 존재로서 일반 사적 지주에 비견되는 존재는 해체되어 가고 있었던 왕실지주가 아니라, 이들을 해체시키고 지주경영을 강화해 갔던 도장이었다. 궁방전 지주경영의 중심적 존재가 도장이었듯이 19세기 말~20세기 초 지주제는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導掌, 궁방전, 지주경영, 삼남지역, 지대, 개항기

투고일(2019. 7. 30), 심사시작일(2019. 8. 12), 심사완료일(2019. 8. 24)

〈Abstract〉

Another aspect of landowner management of Royal Households' Land at the end of 19th century~at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 focused on the Dojang of three southern provinces -

Park sung joon \*

The landowner management of Dojang that formed one part in the Royal Households' Land together with the royal landowner to understand the landowner management of Royal Households' Land synthetically has been checked. Even though the Dojang has been divided as Jakdojang, Napgadojang and Yeokgadojang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rigin, each Dojang has been assigned to the Royal Households' Land all irrespective of type. The landowner management of Dojang was the similar aspect irrespective of occurrence origin of Dojang and Royal Households' Land. The occurrence origin of Dojang and Royal Households' Land didn't have the effect on the landowner management of Dojang.

In terms of the aspect for the landowner management of Dojang of Royal Households' Land, 1) The Dojang built the Dam, repaired if the Dam is broken, maintained and expanded the farmland by cultivating the land not advanced or uncorrected. 2) The absentee landowner took possession of high importance in the Dojang. The Dojang being the absentee landowner identified the harvest as the identical person comes down directly or sending down the related person if it becomes the harvest time by managing by placing the supervisor of a tenant farm in the field. 3) The Dojang did the landowner management with the diverse method of system paying the half (50%) of crop, system paying the determined amount, etc. The landowner management of this Dojang was the similar image to the general landowner in fact.

The Dojang taking charge of one part for the management of Royal Households' Land has been reinforcing the landowner management through the positive farmland

---

\* Lecturer, Center for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operation as the practical owner of Royal Households' Land and the principal agent of farmland operation. Even though the absentee landowner realized the center in the Dojang,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 of landowner management and the amount of rent with the private landowner. The aspect of landowner system expanded upon the opportunity of opening the port at the end of 19th century ~ at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has appeared equally in the landowner management of Dojang of Royal Households' Land.

**Key Words** : Dojang(導掌), Royal Households' Land, the landowner management, three southern provinces, the rent, the open-port period